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기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1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3.

발 의 자 : 김기표 · 맹성규 · 송재봉
최기상 · 문진석 · 김남희
한정애 · 서영교 · 권칠승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,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그러나,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,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“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”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2 등).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제4호 중 “대한 수사를 의뢰하기”를 “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”로 한다.

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”를 “성폭력범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신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6조(수신자료의 보존·사용·폐기 등) ① (생략)	제16조(수신자료의 보존·사용·폐기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·조회·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<u>대한 수사를 의뢰하기</u>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	4. ----- ----- ----- <u>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</u> -----
③ 삭제	
④ ~ ⑦ (생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32조의2(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)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보호관찰소의 장은 <u>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</u>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	제32조의2(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<u>성폭력범죄</u> ----- ----- -----

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 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야 한다. 1. ~ 4. (생 략)	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--	---